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18 선고 2021가단508302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현

변론 종결2021. 11. 4.

판결 선고2021. 11. 18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,342,884원 및 그 중 2,451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1. 16.부터 2021. 2. 14.까지 연 6%, 3,465,614원에 대하여는 2021. 1. 29.부터 2021. 2. 27.까지 연 6%, 5,479,518원에 대하여는 2021. 2. 24.부터 2021. 3. 25.까지 연 6%, 6,090,290원에 대하여는 2021. 4. 8.부터 2021. 5. 7.까지 연 6%, 6,856,462원에 대하여는 2021. 4. 16.부터 2021. 5. 15.까지 연 6%, 각 그 다음날부터 2021. 6. 24.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피고 C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1)에 대하여만 다투었을 뿐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,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)

판사김상훈

별지

1)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21. 10. 14.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.